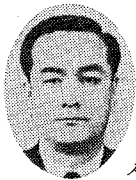


# 工業所有權審査의

## 效率化方案

沈 貞 燮

(서울工大教授·工博)



### 1 問題의 提起

特許制度는 본래 産業上 有用하고도 新規性 있는 發明을 한 사람에게 一定期間 獨占 排他權을 부여하고 대신 그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게 公開 使用토록 함으로써 産業發展과 公共의 福利를 증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특허제도는 16세기 이래 英國을 위시하여 世界 100餘個 國에서 採擇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개발의 原動力이 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허制度의 運用에 있어서 特許性(산업상 유용성 및 신규성, 기술적 진보성)에 대한 審査를 嚴正하게 하지 못하고 單純 安易하게 特許權을 認定한다면 오히려 特許制度로 말미암아 産業發展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큰 惡影響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도 紛爭과 混亂을 惹起하는 副作用이 따를 것이므로 特許制度는 審査의 嚴正性 여하에 따라서 成敗가 左右되는 제도인 것이다.

흔히 特許審査를 拒絕의 「理由를 發見하는 일」이라고 하는 까닭도 特許制度의 肯定的인 側面보다 그 副作用과 惡用者를 警戒해야 한다는 否定的인 측면에 力點을 두고 하는 말이라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現代企業은 競爭이 熾烈하면 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獨占權을 획득하려는 傾向이 심해질 것이니 審査官은 出願者側(發明者, 辨理士 등)과 宿命的으로 技術的인 對決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이 兩者가 善意의 技術的

對決을 하지 않고 불순한 動機로 野合을 한다면 가의 外부의 不當한 壓力에 屈한다면 特許制度는 오히려 國家의 利益보다 不利益을 초래할 것이며 더우기 外國出願分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不純한 야합과 醜복이 성행한다면 실로 國家 將來를 위하여 중대하고도 무서운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국내 大多數의 企業體가 特許料로서 2~5%씩 該當되는 額數를 不當한 外國權利者에게 每年 支拂한다고 假定한다면 국내기업은 무엇으로써 擴大成長하고 국민경제는 무엇으로써 發展할 것인가? 審査官 개개인의 拒絕理由를 發見하는 能力과 愛國心이야 말로 特許制度 運用에 큰 役割을 맡게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拒絕의 理由를 發見하는데 있어서 必須 不可缺한 또 하나의 要素는 풍부한 技術情報資料의 확보와 迅速 正確하게 活用할 수 있는 科學的인 檢索시스템의 확립인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審査官의 能力과 自覺心만으로는 결코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審査官이 거절의 이유를 發見하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의 중요한 것은 業界와 學界, 研究機關의 審査參與와 協調라고 할 수 있겠다. 特許出願이란 원래 技術的으로 複雜한 것이기 때문에 有能한 審査官이 豊富한 資料에 의거하여도 未盡한 것이 많을 것인즉 각기 專門 細分化된 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斯界의 專門家들이 이에 關心을 두고 制度上 2個月 또는 1個月의 公衆審査期間에 參與하지 않는다면 審査의 完璧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審査官, 業界, 學界(또는 專門研究

機關)가 三位一體가 되어야 비로서 審査의 嚴正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特許制度 본래의 목적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 어느 한가지 要素만이라도 缺如된다면 特許制度 運用에 있어서 危險성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審査制度上的 當面問題

### (1) 審査官의 專門化

審査官은 特許審査를 함에 있어서 自己 責任 아래 獨自的으로 決定을 내리도록 그 獨立性이 保障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이 이에 필요한 技術的 知識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만 拒絕의 理由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先進國에서는 一定한 資格을 가진 사람이 一定期間 研修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맡을 수 없으며 일단 맡게되면 통상 30~40년간을 終身勤續토록 制度化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審査結果는 嚴正하고도 國家利益에 符合되며 權威가 確立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不當하게 異議를 提起하는 事例가 없어 한번 設定된 權利는 곧 安定된 企業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審査官의 資格 및 研修義務制度가 形式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分野別 專門家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非專攻者가 다수 兼職하고 있는데다 同一 職種에서도 專門 細分化를 못하고 있어 技術的으로 高度한 出願을 審査함에 있어 상당한 困難을 겪어 拒絕의 理由를 發見하는데 未盡한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頻繁한 人事交流나 離職 등 人事交替率은 지난 75년에 48%나 되어 이와 같은 現象은 審査官의 專門化에 큰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다.

### (2) 審査官의 量的確保

지난 해 우리나라의 出願件數는 內外國人을 합쳐 26,367件이나 되며 올해 上半期에 14,614건이 또 出願되었다.

이와 같이 해마다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는 出

願量에 대해 이를 審査해야할 審査官은 고작 29名으로서 年平均 審査官 1인이 846件이나 되는 出願事案을 處理하고 있다. 이는 日本의 344件, 美國의 150件的 處理量에 比하여 너무도 過重한 負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未處理 件數는 累積되고 審査가 늦어지며 소홀하다는 非難을 받고 있으니 무엇보다 人員의 大幅的인 增加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그 동안에 審査官 한사람이 年平均 846件을 처리하였다는 것은 매일 2.6件을 處理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出願內容이 單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速決主義는 特許審査에 관한 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되며 최근 拒絕豫告의 增加傾向은 이를 如實히 反映해 주고 있다.

더우기 外國出願이 重化學工業分野로 늘어남에 따라 出願內容이 高度化 내지는 複雜化해 가는 趨勢를 勘案하면 審査官의 量的確保는 그 어느때보다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 (3) 技術情報資料의 管理

前述한 바와 같이 審査의 嚴正을 기하여 不實權利 設定을 防止하려면 有能한 審査官의 확보와 아울러 審査參證資料에 필요한 國內外的 豐富한 科學技術情報資料와 關係文獻들이 確保 備置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情報資料가 科學的인 檢索 시스템에 의하여 필요할 때 迅速 正確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UN統計에 따르면 현재 世界에서 發刊된 技術雜誌는 年 4만種이고 그 가운데 300萬건의 論文이 掲載된다고 하며 技術單行本만 하더라도 3,000만권이 發刊된다고 한다.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日本 등 5個國이 가지고 있는 特許公報만 하더라도 358만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73년까지 新規性 判斷基準을 國內에 두는 이른바 國內主義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情報資料의 확보를 疏忽히 하였으나 74년부터 準國際主義의 採擇으로 外國의 情報資料를 바탕으로 한 新規性 判斷이 切實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關係當局이 備置하고 있는 技術情報資料는 10萬卷에 未達하며 그것도 人員과 裝

備의 不足으로 分類 및 整理가 完璧하지 못한다. 缺本이 많아서 審査資料로서는 未洽한 點이 많은 實情에 있다. 여기에다 龍大한 資料를 確保할 수 있는 豫算의 뒷받침과 分類 및 整備에 適任되는 語學과 技術解得力을 兼備한 人力을 갖 추기란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선 美國과 日本 및 主要 先進國의 特許公報 만이라도 細密히 分類하여 備置토록 하고 早速한 時日內에 이를 마이크로 필름에 詳細하게 分類 收錄토록 努力하는 것이 緊急한 當面課題일 것이다.

#### (4) 産學界의 審査參與

지난 75年末 현재 우리나라의 特許權 設定(登錄) 件數는 4,841件인데 비해 日本의 그것은 約 50萬件으로서 그 가운데 日立製作所의 所有件數는 約 15,000件이나 되어 우리나라 總 件數의 3 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技術開發과 特許權 獲得에 무관심한가를 立證하는 것이며 설혹 關心이 있다 하더라도 科學的인 基礎知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外國에서 公知된 낡은 技術의 獨占的 行使를 목적으로 하는 출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出願의 拒絶率이 特許의 경우 일본이 30%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80%나 되는 높은 比率를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이와 같은 趨勢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特許出願과 權利設定 件數는 內國人보다 外國인의 것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豫想되니 우리나라 特許當局은 結果的으로 外國人の 權利를 保護해 주기 위해 存在한다는 結論이 된다.

따라서 外國出願에 대한 不實權利 設定을 事前에 防止하고 設定 後 不當한 權利行使를 未然에 措處하기 위해서는 審査官의 審査處理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業界와 學界 그리고 專門研究機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公衆審査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며 業界에서도 相互 緊密한 協調下에 情

報交換 및 異議申請資料 등을 提供해 주는 活動이 그 어느때 보다 切實하다 할 수 있겠다.

### ③ 審査効率化 方案

우리나라 特許制度 運用上 특히 審査處理의 能率化에 관한 問題點은 위에서 指摘한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이들의 거의가 새로히 發足되는 特許廳의 努力과 誠意로서 解決되고 是正되어야 하겠지만 이 가운데 審査官의 確保 및 質的인 向上 問題는 本制度 運用의 根本이 되는 동시에 期必 達成되어야 할 基本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審査官의 量的 確保는 機構의 擴大에 隨伴하여 解決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優秀한 專門要員의 配置 및 長期勤續으로 誘導해야 할 問題는 人事의 合理的 運營, 報酬體系의 確立, 專門要員의 長期的인 需給對策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그 實効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審査官에 대한 優待措處는 技術을 審査處理한다는 特殊性을 考慮하여 法官의 報酬支給基準에 맞추어 特別手當을支給하는 制度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고 專門要員의 長期的인 需給은 최근 特許協會에서 政府에 建議한 바와 같이 辨理士 試驗制度를 總務處 主管으로 하여 優秀한 關係人材를 登用한다던가 職種別로 技術士資格人士를 採用하여 研修를 통해 審査官에의 資格을 賦與하는 制度的 改善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여기에 機關長의 獨立된 人事行政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合理的인 人事管理運營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현재 審査處理能率을 높이기 위한 外部人士에의 委囑審査制度는 審査官의 業務를 덜어 줄 수 있는 要素가 된다고 하겠으나 豫算面에서의 制約 등으로 所期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오히려 出願의 事前의 豫備審査를 強化한다던가 審査官의 質量 確保로서 이러한 問題들이 카아버되어 나아가는 것이 審査의 効率을 기할수 있는 方案이 되지 않을까 보아진다.